

보도일시 (인터넷) 2026. 2. 3.(화) 11:00,  
(지면) 2026. 2. 4.(수) 조간

배포 2026. 2. 3.(화) 06:00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2월 4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 2. 15.)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보험료연 1.5만 원/1인
-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보험료연 10~30만 원/1인, 기타국비 50%+지방비 24~40% 보조
- ▲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보험사마다 상이

※ 보험료는 보험종류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진우 (051-773-5460)
		담당자	사무관	박혜진 (051-773-5463)



## 참고1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설명회 개요

###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4.(수) 10:00~11: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4층)

\* 당일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지방정부 워크숍 진행(오후)

○ (참석 대상) 지방정부 담당 실무자(어업분야·계절근로제),  
수협, 어업분야 민간 종사자 등

※ (필참) '26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1월중 공모 예정) 참여 희망 시·도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및 의무가입 보험제도(3종) 안내 등

※ 미가입 시, 관련법에 의거 벌칙·양벌규정이 있으므로 담당자 필참 요망

### □ 진행순서

※ 사회: 해양수산부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3	3'	▪ 인사말씀		해양수산부
10:03 ~ 10:13	10'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주요 개정(개정 '25.8.14., 시행 '26.2.15.) 사항 안내		해양수산부
10:13 ~ 10:30	17'	▪ 의무가입 보험안내	① 상해보험	(주삼성화재)
10:30 ~ 10:45	15'		② 임금체불 보증보험	SGI서울보증
10:45 ~ 11:00	15'		③ 어업인 안전보험	수협중앙회
11:00 ~ 11:30	30'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

# 2026년부터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고용주는 든든하게!!! 근로자는 안전하게!!!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즉, 사각지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주가 꼭 가입해야 할 보험 🙌 가지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아래 두가지 보험 가입 제외

### 1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 걱정 NO!)

- ☑️ 가입자 : 어업인(고용주)  
\* 가입제외 대상(법인 or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 ☑️ 가입목적 :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 생계 보호, 고용주 채무 해결
-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 납부주체 및 보험료 : 고용주 100% 전액 부담
- ☑️ 보장내용 :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원 보장
- ☑️ 가입방법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 2 어업인 안전보험 (일하다 다쳤을때!)

- ☑️ 가입자 : 어업인(고용주)  
\* 가입제외 대상(법인 or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적용 사업장)
- ☑️ 가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상해·질병 보상
- ☑️ 가입시기 :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입국자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 납부주체 및 보험료 : 고용주 부담(주계약 보험료 50% 지원, 일시납)  
\* 산재2형: 90일 132,500원 / 150일 198,800원 / 240일 265,000원
- ☑️ 보장내용 : 어업작업 중 사망·상해·질병 보상  
\* 산재2형: (사망) 1.2억원 + (장례비) 1천만원, (장해) 최대 1.2억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
- ☑️ 가입방법 :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2026년부터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고용주는 든든하게!!**  
**근로자는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꼭 가입해야 할 보험 🇵🇸 가지



**3 상해보험 (일상생활 중 아플때)**

- ✓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인)
- ✓ 가입목적: 어업작업 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질병 보상
- ✓ 가입시기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 ✓ 납부주체 및 보험료 : 계절근로자 본인 100% 전액부담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고, 월급에서 공제가능)  
※ Tip: 고용주가 먼저내고,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 가능
- ✓ 보장내용: 일상생활 중 사망·장해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천만원, (상해장해) 최대 3천만원 등
- ✓ 가입방법: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한눈에 보는 의무가입 보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구분	임금체불 보충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누가 가입?	고용주(전액)	고용주(50%지원)	근로자 본인
무엇을 보장?	체불임금 (최대 400만원)	입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언제 가입?	근로 시작 이후 30일 이내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 이내
가입방법은?	지자체안내(추후안내)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 직접 방문	지자체안내(추후안내)

\*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해당 보험 가입 제외

**① ② ③ 미가입시 불이익 : 5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